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5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이성윤 · 허성무
 · 박芝源 · 박홍배 · 임오경
 · 박민규 · 김 윤 · 김 현
 · 조계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, 노면전차,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,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,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도로교통안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이러한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.

그러나 경운기,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‘차’에는 해당되지만 ‘자동차’에는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

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
임(안 제2조제17호가목5) 및 제18호다목 신설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7호가목5)를 6)로 하고, 같은 목에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) 농업기계 중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

다.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6. (생략)</p> <p>17. “차마”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“차”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em;">1) ~ 4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5)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나. (생략)</p> <p>17의2. (생략)</p> <p>18. “자동차”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(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)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·나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17.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----- ----- 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em;">1) ~ 4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5) <u>농업기계 중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6) (현행 5)와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17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8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「<u>농업기계화 촉진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</p>

18의2. ~ 34. (생략)	<u>정하는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</u> 18의2. ~ 34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	---